것이 타당하다는 보고가 있어 "의결"을 "협의"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우리 委員會에서는 심도 있는 심사 결과 수정의결하였던 것인바, 여러 議員님께서도 水資源管理委員會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만장일치로 가결시켜 주시길 부탁드리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文一權 수고하셨습니다.

서울特別市災害對策本部의構成및運營等에關한條例을 水資源管理委員會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議員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議事棒 3打)

.....

(參 照)

서울특별시재해대책본부의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안

서울특별시재해대책본부의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조례안 제3조제1항제2호중 "의결된"을 "협의된"으로 한다.

조례안 제3조중 "제4호"를 "제5호"로 하고, 동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지역민방위협의회에서 의결된 재해대책의 집행에 관한 사항.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재해대책본부의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재해대책본부(이하 "재해대책본부"라 한다)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해대책본부의 조직) ①재해대책본부에는 본부장 1인 및 차장 1인과 본부요원 약간명을 둔다.

②재해대책본부의 본부장은 서울특별시장이 되고 차장은 행정(2)부시장이 된다.

③재해대책본부의 본부요원은 총괄조정관·통제관·담당관 및 실무반원으로 구성하며 총괄조정관은 기획관리실장이 되고 통제관 및 담당관은 재해별주무국장·과장(풍수해관련 업무는 하수국장·치수과장, 설해관련 업무는 도로국장·도로관리과장)이 되고, 실무반원은 서울특별시재해담당국 관련 공무원과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파견된 자 등으로 한다.

제3조(재해대책본부의 기능) 재해대책본부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관할구역안의 재해응급대책의 총괄조정 및 집행
2. 재해대책본부회의에서 협의된 재해대책의 집행에 관한 사항
3. 중앙재해대책본부로부터 지시받은 사항
4. 지역민방위협의회에서 의결된 재해대책의 집행에 관한 사항
5. 기타 관할구역안의 재해예방, 재해응급대책, 재해복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재해대책본부의 운영) 재해별 재해대책본부 및 재해대책상황실의 구성, 운영기간, 수행업무, 근무요령 등 재해대책본부의 운영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재해기간 공무원 파견 근무 요청) 재해대책본부장은 재해대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재해관련기관 소속 공무원의 파견 근무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6조(재해대책본부회의의 구성) ①재해대책본부회의는 의장 1인과 부의장 1인을 포함하여 16인이상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의장 및 부의장은 각각 재해대책본부장과 차장이 된다.

③위원은 다음 각호의 기관(이하 "재해관련기관"이라 한다)에 소속한 3급이상 공무원중에서 소속기관장의 추천에 의하여 재해대책본부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구성한다.

1. 서울특별시
2. 서울지방경찰청
3. 수도방위사령부

4. 서울특별시교육청
5. 서울체신청
6. 서울지방국토관리청
7. 서울지방노동청
8. 기상청
9. 서울지방철도청
10. 기타 재해대책본부장이 재해대책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④재해대책본부위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실무회의를 둘 수 있으며 실무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재해대책본부회의의 운영) ①의장은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할 때 또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 재해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한다.

②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고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재해대책본부회의의 협의사항) 영 제11조제4항에 규정된 재해대책본부회의의 협의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재해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2. 재해응급대책에 관한 사항
3. 재해복구계획에 관한 사항
4. 기타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9조(재해대책본부회의 위원의 임기) 제6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10조(재해대책본부회의 위원의 수당) 재해대책본부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기타 이 조례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12. 서울特別市漢江公園市民利用施設의設置및運營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水資源管理委員會 委員長 提案)

(15時 15分)

○議長 文一權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서울特別市漢江公園市民利用施設의設置및運營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을 상정합니다.

(議事棒 3打)

水資源管理委員會 鄭炳權議員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鄭炳權議員 水資源管理委員會 소속 鄭炳權議員입니다.

존경하는 先輩·同僚議員 여러분, 서울特別市漢江公園市民利用施設의設置및運營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에 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條例改正案을 제안하게 된 배경은 지난 2월 14일 서울特別市長이 한강공원이용에 따른 사용료를 조정하겠다는 동의안을 본 議會에 제출한 바 있고, 이에 우리 委員會에서 본 안건을 심사하였으나 사용료 징수에 대한 것을 地方自治法 제130조에 의거 사용료, 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條例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이를 條例를 개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에 따라서 의원입법으로 서울特別市漢江公園市民利用施設의設置및運營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을 우리 委員會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되어 오늘 本會議에 제안설명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서울特別市漢江公園市民利用施設의設置및運營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地方自治法 제130조제1항에 의하면 사용료, 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條例로 정하여 징수하도록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시설의 사용료를 결정하고 조정시에는 조례 개정을 통하여 징수 결정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시민의 의무부담을 지우는 사안에 대해서는 입법예고를 통하여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밟도록 하는 民主的 절차를 마련키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개정안을 통하여 한강공원 시민이용시설 사용료 금액 및 조정 결정사항을 條例에 직접 규정하고 명문화시킴으로써 시민의 의무부담을 수반하는 사안에 대하여 民主的 절차로 정해진 입법예고를 통한 시민의 의견이 수렴되는 기회가 제공되도록 개선